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6.8.20. 시행)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본 설명회

2026. 8. 1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0. 목 차

1. 개정 특금법에 따른 신고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안내

1-1. 특금법령 개정 사항

1-2. 신고업무 절차 개요

1-3. 신고 매뉴얼 주요 개정 사항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

4. 신규신고 관련 안내

5. 주요 FAQ

6. 향후 일정

7. Q & A

1. 개정 특금법에 따른 신고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대주주 정의 추가 (법 제2조제7호)

: 최대주주 (본인+특관인), 주요주주 (10%, 사실상 영향력*)

*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 선임, 회사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

➤ 대주주 신고 의무 법률로 상향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 시행령 제10조의11제2항)

: 대주주의 실지명의, 국적, 보유현황 신고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를 포함 (단순히 특수관계인이라고 포함되는 건 아님)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참고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1) 최대주주* 및 2) 대표자를 포함

* 본인의 최대주주인 그 법인의 최대주주만이고, 다시 그 대표자까지는 아님 (→ P.35 FAQ참고)

1-1. 특금법 개정 사항

➤ 불수리 사유 확대 (법 제7조제3항 각호)

- : ① 법률위반이력 대상에 대주주 포함, 대상 법률 추가 [경제범죄, 비금융범죄(금고형 이상)]
- ②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③ 법령준수체계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 ④ 거짓신고, 미기재
- ⑤ 파산선고 이후 미복권,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 (기존) ①ISMS 인증 미획득, ②실명계정 미획득(가상자산과 금전간 교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
③최근 5년 내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없을 것 ④신고말소 후 5년 미경과

➤ 조건부 신고 수리 제도 마련 (법 제7조제10항)

: 신규·갱신·변경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행위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필요 조건 부가 가능

1-2. 신고업무 절차 개요



*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 사업자 면담, 현장 점검(법령준수체계 관련 실지조사)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법률위반이력** (법 제7조제3항**제3호**)① 심사 대상 확대 : 대표자, 임원 → **대주주** 추가 (대주주 정의는 법 제2조제7호, 제7조제1항제1의2호 참고)② 심사 대상 법률 확대 : **경제범죄** 추가 (벌금형 이상), **非금융관련 법령** 추가 (금고형 이상)

구 분		현행법	개정안※	
벌금 이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관련 법률	- 특정금융정보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테러자금금지법 - 〈신설〉	- 특정금융정보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테러자금금지법 - 마약거래방지법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포함
	금융범죄 관련 법률	- 외국환거래법 - 자본시장법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 외국환거래법 - 자본시장법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경제범죄 관련 법률	〈신설〉	- 공정거래법 - 조세범 처벌법 - 특정경제범죄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	
금고 이상		〈신설〉	- 기타 다른 법률	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

※ 대주주의 경우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받거나, 법령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시행령 §10의2① 각 호)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법 제7조제3항제5호) → 구체적 내용은 감독규정 [별표2] 참고
: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임원, 대주주 별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할 것

구 분		주요 심사 요건
사업자		✓ 부채비율 200% 이하* * i)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예치금(원화마켓 등), 미정산 잔액(전자금융업 등)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ii)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 제외
대주주	법인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없을 것 ✓ 최근 5년간 「금융구조개선법」 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영업 취소 등 된 자가 아닐 것 ✓ 금융관계법률(외국 법률 포함)에 따라 영업 정지 등 조치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 * 단, 갹신신고 수리, 직권말소 요건에서는 제외 ✓ 「금융사지배구조법」 §5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단, 기존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7호에 해당할 경우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는 불수리 요건에서 제외(「금융사지배구조법」 §5② 단서 적용)
	개인	✓ 「금융사지배구조법」 §5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단, 기존에 신고 수리된 임원, 대표자, 대주주(내국인 개인)가 제7호에 해당할 경우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는 불수리 요건에서 제외(「금융사지배구조법」 §5② 단서 적용)
임원 및 대표자		-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참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미복권
3. 금고 이상의 실행 선고 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미도과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5. 「금융사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미도과
6. 아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조치일부터 5년 미도과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이 취소
 - 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사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임직원 제제조치 받고, 조치일부터 5년 미도과
8.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정하는 자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법령준수체계 (법 제7조제3항제6호)

: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테러자금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

⇒ 기존에는 신고사항을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특금법령 개정으로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바,
서류 검토를 기반으로 적정성 실질 평가 수행 예정 (필요 시 현장 조사 실시)

※ 관련 법령 준수체계 및 자율규제(DAXA)사항*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자금세탁방지나 가상자산 거래질서 및 이용자보호 등에 문제 없는지 → 실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검토

*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매도/현금화 가이드라인〉 등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법령준수체계 1. 인력 (법 제7조제3항제6호)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아래 1) 또는 2) 기준을 충족하는 **준법감시인**을 둘 것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제도이행평가 지표상 인정되는 전문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수료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 TPAC, CAMS, KCAMS,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 등

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포함)을 **4명 이상***으로 확보할 것

* 사업형태, 조직규모, 인력운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AML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시 검직 가능

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산요원**을 둘 것

*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제 준하는 교육과정 수료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등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법령준수체계 2. 조직 (법 제7조제3항제6호)

2. 조직에 관한 요건

가. 이사회, 대표이사(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를 둘 것

나.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갖출 것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12~§16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외부전문가 등 위탁도 인정 가능)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법령준수체계 3. **전산설비** (법 제7조제3항제6호)

3. 전산설비에 관한 요건

가. 자금세탁방지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 관련 전산설비를 포함한 업무관련 전산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고,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다.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방안이 확보되어 있을 것

라.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마. 중요도에 따른 백업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데이터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분리되어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고 충분한 사용권한을 갖추도록 하여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실질적 장애가 없을 것

* 클라우드를 이용 시 국내 리전(region)에 위치한 경우 국내로 인정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법령준수체계 3. **전산설비** (법 제7조제3항제6호)

3. 전산설비에 관한 요건

사.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아. 영업종료, 개인정보유출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산설비 및 보안시설을 갖출 것

차. 가상자산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가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정보, 거래정보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법령준수체계 4. 내부통제체계 (법 제7조제3항제6호)

4.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요건

가.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과 절차 등

- 1) 경영진 ·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부합할 것
- 2) 영업내용 · 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경영진 · 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
- 4) 전산사고 등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절차·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건전성과 타당성

-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 영,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부합할 것
- 2)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 영,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거짓신고, 미기재 (법 제7조제3항제7호)

: 신청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필요사항을 미기재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

- 심사 과정에서 제출 서류,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 신고 수리 이후에도 거짓이나 미기재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 말소 가능** (법 제7조제4항제1호)

1-3-1. 불수리 사유 추가 및 확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법 제7조제3항제8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규 신고 시에는 제외

1-3-2. 변경신고

➤ 변경신고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① 사후신고 → **사전신고** 전환

- **대주주, 법령준수체계***: (현행) 사후 14일 → (개정) **사전 30일**

* 대주주, 법령준수체계는 금번 개정으로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에도 해당

※ 사전 신고 사항은 신고 수리(통보) 전에 신고 사항 시행·실행 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법 제17조) 및 **행정제재**(법 제15조·제20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② 변경신고 기한의 기산점인 **변경사항 발생일***의 구체화

* ‘실제 변경된 날’로 보는 유권해석(법제처, 금융위)을 원칙으로, 타업권(온투업, 전금업 등) 사례 및 실무 애로사항 반영

※ 변경신고 별 구체적인 서류는 신고매뉴얼 P.30~31 참고

1-3-2. 변경신고

➤ 변경신고 – 사후 신고

신고 사항	신고 기간	기산점	
		기존	개정
- 상호 -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의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 도메인 이름 ※ 거래소 도메인 포함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후] 14일 이내	변경사항 발생일	등기부상 변경일
			실제 연락처 이용일 (개통·사용 등)
			실제 우편주소 및 도메인 사용일 (대외적 게시 등)
			실제 점유·사용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사후] 30일 이내		인증서 수령일

➤ 변경신고 – 사전 신고

신고 사항	신고 기간	기산점	
		기존	개정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	[사전] 30일까지	주총·이사회 의결일	(좌 동)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소재국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 대주주 변동(신규 or 제외)에 이르지 않는 단순 지분율 변동은 신고 불요		명의개서일	(좌 동)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수행 행위 실제 개시일	(좌 동)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계약체결일	계약개시일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 법령준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주요 변경사항 한정		변경사항 발생일	실제 변경일

1-3-2.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전 신고: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변경신고 범위

구분	변경 사항	변경 기준
조직·인력	✓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변경 ✓ (조직변경 등 회사 의사결정에 따른) AML 종사 인력의 급감* 등 * AML 종사 인력이 4명 미만(감독규정 [별표 3] 제1호나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인 경우 총원계획을 함께 제출 - AML 종사 인력을 10인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30% 이상 급감 - AML 종사 인력을 10인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 총 인원이 3명 이하로 감소	실제 퇴사·근무 시작일 등
전산설비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STR, KYC, WLF, RBA) 및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시스템 (이상거래상시감시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 시스템 운영 중단·재구축, 운영주체 변경 등	실제 수행일 등
내부통제	✓ 가상자산 관련 법령 및 규정(감독규정, 업무규정 등) 개정에 따른 내규 변경 ✓ 가상자산 관련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규 변경(단순 자구 수정, 용어 정비 등은 제외) 등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제외[자회사·지분투자를 통한 신규사업 포함(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주체는 해당 자회사·피투자회사)]	내규 시행일 등

※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의 중대한 변경이 수반된 사업의 변경(신규사업 출시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FIU·금감원과 협의할 것을 권장

1-3-3. 비수탁형 지갑 관련

-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 **FIU에 신고할 의무**
 ⇒ 지갑 서비스 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신고 대상(VASP) 여부 판단 기준 마련**

기존 신고매뉴얼	개정 신고매뉴얼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 ◇ 독점적인 관리 권한 여부: ㉠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 및 주소·지갑이 생성되는지, ㉣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해외 규제 사례, 국내 주요사업 구조, 특금법령 개정(안) 규정,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 특금법에 따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기본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수리)은 처분 당시의 법령 적용이 원칙*

* 행정기본법 §14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개정 특금법령은 신고 수리와 관련, 부칙을 통해 적용 시점* 등 일부 예외 적용

* 시행일은 '26.8.20일로 동일하며,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해 적용 시점을 유예한 것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법 부칙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 개정법 시행일(8.20일) 당시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3개월(~11.20)** 이내에 FIU에 부칙 **신고** 필요

☞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P.28) 참고

※ 신고 기한 미준수 시 **형사처벌(법 §17)** 및 **행정제재(법 §15, §20)**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법 부칙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임원·대주주 관련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임원·대주주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자·임원·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법 시행 당시 **신고 수리된 사업자의 대표자·임원·대주주의** ㉠**법령 위반이력**(법 제7조제3항제3호), ㉡**사회적 신용**(법 제7조제3항제5호)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행위시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법 적용**
 - 기존 대표자·임원·대주주도 **시행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
 - 대표자·임원·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법 적용**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법 부칙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법 시행 당시 **신고 수리된 사업자의** ㉠**법령위반**이력(법 제7조제3항제3호), ㉡**사회적 신용**(법 제7조제3항제5호)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행위시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법 적용**
 - 기존 사업자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감독규정 부칙 제2조(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별표 2·별표 3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4호 서식은 이 규정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 변경신고 또는 갱신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21358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조에 따른다.

- 개정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규·갱신·변경신고도 개정규정 및 관련 부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 심사·수리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감독규정 부칙 제3조(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가목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시행 당시 **신고 수리된 사업자의 재무상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체계** 관련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불수리, 직권말소**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개정규정에 따른 부칙신고 및 갱신·변경신고 시 관련 서류는 제출 필요

※ 사업자의 재무상태([별표2]의 제1호 가목)가 유예인 것이고, 대주주는 별도 예외 규정 없음을 유의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감독규정 부칙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제27조제5항제5호에 대한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제27조제5항제5호에 대한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사후→사전신고로 전환된 변경신고 사항** [대주주, 법령준수체계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체계)에 대해 변경신고 기한 특례 적용

① 시행일부터 40일 이내 대주주, 법령준수체계가 변경(예정)인 경우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변경신고 기한 연장

* 예) 9.20일 대주주 변경 예정인 경우 8.30일까지 변경신고

2.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예외 사항 안내

감독규정 부칙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제27조제5항제5호에 대한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제27조제5항제5호에 대한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시행일 전에 대주주, 법령준수체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기한은 종전 규정과 동일***(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예) 8.18일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9.1일까지 변경신고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

➤ 신고 **대상자** : 시행 당시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 신고 **기한** : 2026. 11. 20.(금) 24:00*

* 시행일(8.20일)부터 3개월 이내(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단서 적용, 초입불산입)

➤ 수리 **요건** : ①기한 준수*, ②필요 서류 제출 여부

* 신고 기한 미준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

※ 수리 통보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

➤ 업무 **절차** : **현행** 신고 업무 **절차와 동일**

- (사업자) FIU로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FIU) 금감원으로 심사 요청

→ (금감원) 심사 후 FIU에 결과 송부 → (FIU) 신고 수리 여부 결정 및 통지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

➤ 신고 범위 : 법 제7조제1항 개정규정* 관련 일체

* 법 §7①1의2(대주주), §7③3(법령위반이력)·5(건전한 재무구조 및 사회적 신용)·6(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7(거짓·미기재)·8(파산 후 복권, 영업실적 여부)

- 현재 변경신고 심사 중이어도 부칙신고 대상인 경우 별도 신고 필요*

* (예) 대주주 변경신고 후 심사중인 사업자도 부칙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재신고해야 함

관련 법	개정 사항	신고 대상	비고
제7조제1항1의2호	대주주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	제2조제7호 참고
제7조제3항제3호	법령위반이력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제7조제3항제5호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제7조제3항제6호	법령준수체계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사업자	
제7조제3항제7호	거짓 또는 미기재	사업자	
제7조제3항제8호	파산 선고 후 미복권, 6개월 이상 영업 실적 없음	사업자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

➤ 제출 서류: 개정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 신고서 상 첨부서류와 신고 매뉴얼의 확인서 서식을 기본으로 제출하되,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개정 사항	제출 서류	비고
대주주에 관한 사항	대주주 및 지분현황 정리 자료	· 주주명부 공증본 등
법령위반이력	법령위반이력 없음에 대한 확인서(사업자, 대표자·임원, 대주주 각각)	· 사실조회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등) ※ 외국인의 경우 대상 국가의 법령위반이력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포스티유 받아 제출)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감독규정 [별표 2]의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음에 대한 확인서(사업자, 대표자·임원, 대주주 각각)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
법령준수체계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감독규정 [별표 3]의 각 항목별 요건을 갖추었다는 확인서	· (조직·인력) 조직도, 인력 현황표,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전산요원 이력 및 자격 증빙서 등 · (전산설비)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관련 내규 및 계획서 일체 등 · (내부통제) 관련 내규 일체 등
거짓 또는 미기재	해당 사항 없음에 대한 확인서	
파산 선고 후 미복권, 6개월 이상 영업 실적 없음	해당 사항 없음에 대한 확인서	

※ 부칙신고를 위한 상기 제출서류 양식 및 확인용 체크리스트는 별도 제공 예정(8.20일 이후)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

➤ 제출 서류 **기준일**: 8.20.이후로서, 제출시의 **가장 최근 자료**

* (예1) 재무제표의 경우: 가장 최근분기(26년 2분기도 가능하나 3분기를 권장)

(예2) 주주명부의 경우: 가장 최근 현황(부칙신고 기한 내에 주주변동 예정**인 경우
변동 이후 현황으로 관련 서류 제출 권장)

** 대주주 변경 시 부칙신고와 별개로 변경신고 대상

※ 본 설명자료의 '6. 향후 일정(P.43)'의 취지와 내용을 참고하여, 부칙신고 대상 사업자는 되도록 최신 현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

※ 참고. 신고서 작성 항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신규 / □변경 /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② 신 고 사 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 총 <u> </u>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대표자·임원 적합여부 ¹⁾	변동내용 ²⁾	
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²⁾ 변경신고시여만 작성하되, 사입, 신규선입, 직위변동 등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③ 대주주 현황 ³⁾						
	대주주 수 : 총 <u> </u> 명						
	주주명	소유주식수 ²⁾ (비율)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국적	대주주 요건 ³⁾ 적합 여부	변동내용 ⁴⁾
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²⁾ 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하며, 대주주 변경신고시여는 취득예정 주식수와 비율을 의미한다. ³⁾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⁴⁾ 변경신고시여만 작성하되, 신규, 저의, 지분을 변동 등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① 신고인

- 신고인의 기본 정보 확인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 대표자·임원 적합여부는 O/X로 표시
- 변동내용은 '부칙신고'로 표시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대표자'는

② 항목도 기입하되, 변동내용에 '대주주' 표시

③ 대주주 현황

-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 모두 기입(p.1 참고)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

※ 참고. 신고서 작성 항목

⑥ 건전한 재무상태 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 . . .	20 . . .	20 . . .	20 . . .
자산총계				
부채총계				
조정부채총계(A)				
자본총계(B)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부채비율(A/B)				

* 별표2 제1호기목 단서에 따라 차감한 후의 부채총액을 기재한다.

⑦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조직인력 현황(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등)

주요 내용	
-------	--

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현황

주요 내용	
-------	--

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현황(사업계획 포함)

주요 내용	
-------	--

③ 건전한 재무상태 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 재무 현황
- 이용자에치금, 미정산 금액을 제외한 부채총계는 ‘조정부채총계’란에 별도 기재

④ 법령준수체계

- [별표 3]의 각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 증빙서류로 제출

※ 부칙신고의 항목 별 제출서류 및 확인용 체크리스트 별도 제공 예정(8.20일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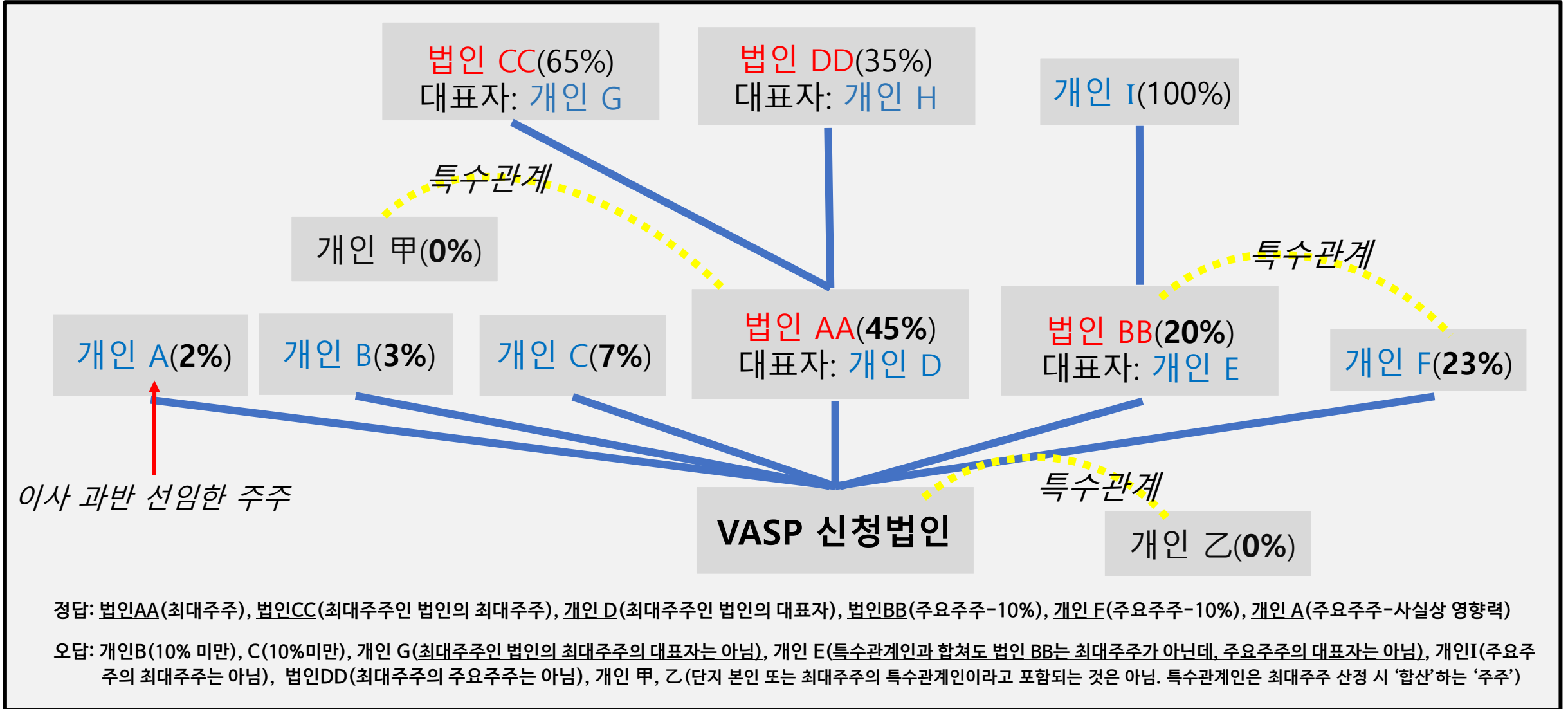
4. 신규신고 관련 안내

4. 신규신고 관련 안내

- 신규 신고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심사·신고 수리
- 신규신고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서류 보완하여 제출
 - FIU는 사업자에게 신고심사 서류를 보완 요청(공문)하고,
사업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서 및 증빙서류 보완하여 제출*
 - * 서류는 문서24를 통해 공문으로 제출하되, 제출 전 FIU·금감원과 사전 협의
 - 제출 대상, 서류는 '3. 개정 특금법 부칙에 따른 신고 사항 안내(p.20~26)' 참고

5. 주요 FAQ

5. 주요 FAQ – 대주주 범위[예시]



5. 주요 FAQ - 신고 요건

Q.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요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적절한’, ‘정당한’ 등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 규모, 업무 형태 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A. 사업 규모·업무 형태 등이 사업자별로 모두 달라, 신고 매뉴얼에서 일률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이용자 자산 보호·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사실적·법적 장애 등이 없는지 등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규모 및 구체적인 업무 형태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
- 특히, 전산설비의 경우 전산 사고·오류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 정보의 유출·탈취 가능성, 이로 인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

Q. 건전한 재무구조 요건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A. 특정금융정보법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회계 기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채택하되, 증빙자료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

5. 주요 FAQ - 신고 요건

Q. 인력 요건과 관련하여 전문교육과정, 자격증은 신고매뉴얼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되는지?

A. 신고매뉴얼의 예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에 준하는 전문교육과정, 자격증도 인정될 수 있음

- 신고매뉴얼은 일반적·포괄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신고매뉴얼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조건)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 가능성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할 계획

5. 주요 FAQ - 변경신고

Q. 대주주, 법령준수체계 사전신고 관련하여,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외부 요인(제3자 주주 간 주식거래 등)으로 인해 신고 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 신고기한 예외를 인정해줄 수 있는지?

A. 각종 변경신고 기한 준수 여부 판단 시, 사업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외부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

- 대주주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 발생(예정)일의 기준이 사업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점을 참고하여 기한 준수에 유의할 필요

5. 주요 FAQ - 변경신고

Q. 하나의 변경신고가 다른 변경신고를 수반하는 경우, 하나의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지?
- 부칙에 따른 신고 기간 내 발생한 변경사항은 신고 한 번으로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A. 법령 상 변경사항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항목별로 제출 필요 서류, 기간 및 기산점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대다수 변경신고 사항이 사전심사*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를 포함한 부칙신고 등 수리
통보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변경이 불허되는 등 사업자에게 불리한 측면

* (사전) 대표자·임원·대주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및 실명입출금계정 변경

(사후) 상호, 소재지, 연락처, 서버 주소 및 ISMS 인증 변경

- 상황에 따라 다수의 변경신고 제출은 하나의 공문으로 한 번에 하는 등 당국 및 사업자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계획

5. 주요 FAQ – 변경 신고

Q. 조직·인력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인력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바, AML 종사 인력의 30% 이상 급감 비율에 대한 기산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A. 변경신고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바, FIU에 신고 수리된 AML 종사 인력 수 기준으로 30% 이상 급감한 경우 변경신고

※ (예) 30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24명 이하로 인력 감소 시* 변경신고 대상

* 30명 → 40명(변경신고 X) → 28명(변경신고 X) → 24명(변경신고 O)

Q. 부칙에 따른 신고 기한(~11.20)까지 개정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A. 개정규정에 따른 직권말소는 각 항목별 부칙에 따른 적용례※ 등에 따라 적용됨

※ (법률위반이력*, 사회적 신용) 시행 당시 신고 수리된 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는 시행 이후 발생 사유부터 개정규정 적용

* 종전규정에 따른 법률(금융관련법률 벌금형 이상) 위반은 직권말소 대상

(재무구조, 법령준수체계) 시행 당시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정규정 적용

- **경과 시점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보완 필요**

6. 향후 일정

➤ (8.20.) 개정 특금법령 시행

- ✓ 특금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신고 관련 업무협조문 배포 → 아래 사항을 한번 더 안내 예정
- ✓ 부칙에 따른 신고 관련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확인서 양식 제공 (8.20. 오후)

➤ (~11.20.) 부칙에 따른 신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 [1] ~10.29.(금)까지 사업자들은 부칙 신고 관련 서류를 fiureport@korea.kr를 통하여 미리 제출 (서류의 형식적 요건 미비 방지 차원) - 제목 준수: [회사명] 예비제출_부칙신고
- [2] [1]이행 및 FIU 확인 후, ~11.20.(금)까지 FIU에 정식 신고를 이행
 - 문서24: <https://docu.gdoc.go.kr>, 수신처 :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검사와,
 - 제목 준수: [회사명] 부칙신고, 첨부파일: 1. 체크리스트 2. 각 확인서 양식(순서대로) 3. 각 증빙서류(순서대로)
- [3] 11.23.(월)부터 부칙에 따른 신고 심사를 시작할 예정 (FIU → 금감원에 위탁)
- [4] 심사가 완료되는 사업자부터 수리에 대한 통지를 할 예정 (FIU)

7. Q & A

Q & A

※ 관련 문의 : (금감원) amlop@fss.or.kr (FIU) fiureport@korea.kr